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이 문서는 '장애인차별 금지법' 관련
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
"사본 PDF" 문서입니다.

등록금심의위원회 4차 회의		일 시	2018.1.15.(월) 14:00
		장 소	본부관 313호
참석위원	정승렬(위원장), 이호선, 김인준, 이승현, 김남균, 원윤성 (이상 6명)		
업무지원	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		
불참위원	김태호 위원		
의 제	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		

◎ 회의내용

1. 개회선언

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7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학년도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-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를 안건으로 하며 학생 측의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의견을 먼저 청취하기로 함.

2.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 심의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생 측 위원이 작성한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에 대해 설명함.
- 법인전입금의 법정 기준 충족을 통해 2.1%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며 예비비 예산 지출 삭감으로 2.0% 인하가 가능함. 또한 적립금 이자수익을 교비회계로 투입하면 1.2%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함.
- 건물 감가상각에 따른 적립금을 등록금 회계에서 전출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에서

소유하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등록금 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은 맞지 않음.
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을 법인에서 책임진다면 추가적인 등록금 인하가 가능함.

- 학생 측에서는 건물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2018학년도 등록금 5.3% 인하가 가능하다고 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법인전입금 관련 사항은 이전 회의에서 많은 답변을 드렸음.
-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예산을 책정해놓는 것으로 예비비를 설정하지 않으면 추가 지출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출이 불가능함.
- 이자수입은 이미 학교 전체 예산에 수입의 구성 요소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자수입을 등록금 인하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.
- 교육 관련 비용에는 건축물 등 인프라에 투입되는 비용도 해당되므로 건축물 감가상각비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비용임. 건축물 감가상각비만큼의 기금적립은 학생들이 지불한 등록금 중 일부를 향후 교육환경 현상 유지에 사용하도록 적립하라는 일종의 규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건물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교비에서 적립해야하는 것으로 보면서 법인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전입금을 100%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모순임.
- 학교 측에서 필요한 권고사항이나 규정은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법인에서 법정전입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에 맞춰 충족하고 있으므로 법인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임.
- 예비비의 경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무리한 금액을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임. 학교 재정이 어려워 등록금을 인상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예비비를 줄여서라도 대응해야 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예비비는 학생들에게 발생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경영자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음. 학생들을 위해 보상액수를 조금이라도 크게 설정하고자 교비에서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음.
- 10년 무사고 경력의 운전자라 하더라도 보험료 아깝다고 보험에 들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에는 대비하여야 하고 예비비는 그러한 성격도 갖고 있는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다면서 예비비와 적립금을 계속 쌓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적립금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노후화 등 향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상황에 대비하는 것임. 선배들이 낸 등록금 중 일부를 적립한 자금으로 건물 보수, 신축 등에 활용하여 현재 재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, 재학생들의 등록금 중 일부를 적립한 금액은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 사용될 것임.
- 예비비는 당기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며 회계상 일종의 가상계정으로 따로 실체가 있는 금액을 별도로 보관하여 적립하는 금액이 아님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7학년도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예비비가 20억 정도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추경 편성 시점에서는 회계연도가 얼마 안 남았으므로 본예산 편성 시와 비교해서 예비비를 줄이는 것임.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한 수입, 지출 대비 변경된 부분을 예비비와 함께 정리하여 추경에 반영함.

■ 간 사

- 회계학적으로 예비비는 통상 예산규모의 1%를 권고하고 있음.
- 대학 회계는 지출 계정에 미리 책정되지 않으면 지출이 불가능함. 결산 전까지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예비비를 책정하지 않으면 계정에 책정된 금액에서 초과 지출 사유가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추가로 추경 등을 편성하여야만 지출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기관의 비용 지출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계정과목을 두고 있는데 일종의 칸막이라고 생각하면 됨. 사람으로 치면 모자를 사는 돈과 양말을 사는 돈이 따로 있어서 갑자기 다른 것이 필요하면 모자 살 돈으로 살 수는 없음. 예비비는 이러한 지출 경직성을 막기 위해 편성하여 두고 있는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그렇다면 예산에 책정되는 예비비는 가상의 돈인지, 필요한 경우에 어디에서 출금하여 지출하는 것인지 질의함.
-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예비비는 등록금, 비등록금 회계에 모두 편성을 하며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해당 계정과목의 지출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남.
- 실제 결산에서 예비비 계정은 없으며 지출한 것은 해당 계정과목에 나타나고 지출하지 않은 금액은 추경과 결산을 거쳐 수입/지출이 확정되면서 사라지는 수치상의 계정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법인의 법정전입금이 2016년 본예산 대비 결산에 감소하였음. 법인에서도 당초 예산에 책정된 규모만큼 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텐데, 사학연금부담금 외에도 전입해야할 금액이 있음에도 법정전입금을 감소시킨 이유에 대해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사학연금부담액은 교원 및 직원 인원수 변동에 따라 연초 대비 달라질 수 있음.
- 법인 결산 자료를 보면 현재 법인의 수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학교로 전입하고 있음.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은 사학연금부담액 만큼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최대한 가능한 금액을 학교로 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우리대학의 학우들도 비싼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지난 번 학생위원들은 소득 분위기를 막론하고 심지어 10분위 가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는데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음. 그러나 학생위원들이 막연히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함.
- 2017년 물가인상 2%만 보더라도 학교에서 재정상 2% 부족한 부분은 설명되므로,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득 분위 7분위 이상 학생들을 참고인으로 하여 진술을 듣는 것이 서로 이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봄. 학생위원들이 이에 협조할 수 있는지 질의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소득분위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집, 자동차 등 재산이 포함되는 것이며 개별 학생들의 소득분위를 학생 측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.
- 학생 측의 입장은 학생의 경제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 구별하기보다는 등록금 인하로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것임.
- 법인이 법정부담금 기준액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법인전입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, 등심위에서 법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전달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 법인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사항임.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법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늘리는 등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해야하며 이는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임.
- 이와 같은 사항을 학교에서 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법인이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학교 측에서 알고 있는 사항은 모두 공유하였음.

■ 위원장

- 학교 측과 학생 측에서 등록금 책정(안)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.

= 잠시 정회를 한 후, 회의를 속개함. =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제시하였으나 학생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 내 국인 학생의 등록금 동결을 제안함. 학생 측의 등록금 인하 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생 측에서는 학부 등록금을 인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학교 측에서는 학교법인이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등록금 인하보다는 생활비 장학금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성적장학금의 비중을 축소하여 생활비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당초 편성한 예산 대비 장학금이 모두 지출되지는 않으므로 남은 금액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편성하면 다른 장학금을 축소하지 않고도 생활비 장학금 확대가 가능할 것임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수입 감소와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예산 대비 장학금 지출액의 변동이 발생한 것임.
-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이 학교와 학생 측의 동일한 의견이므로 학교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생활비 장학금 확대 규모를 결정하면 될 것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등록금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나 학교에서는 인하가 어렵다고 하므로 생활비 장학금 규모를 전년대비 100%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.
- 외국인 등록금 인상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 큰 재정적 부담은 아닐 것으로 판단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생활비 장학금 100% 확충은 학교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임. 확대 규모를 줄이는 것을 제안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생활비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됨. 등록금 인하 여지가 있음에도 동결하는 만큼 학교 측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생활비 장학금을 100% 확충하면 등록금 책정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지 질의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중운위 회의에서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알려주겠음.

■ 위원장

- 내일까지 학생 측에서 학부 내국인 학생 등록금 동결, 학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5% 인상, 대학원 1% 인상, 생활비 장학금 100% 확대 안을 중운위 회의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 측에 알려주기로 함.
- 아울러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주에 관련 자료를 받게 되면 학생 측에서는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예산평가팀을 방문하여 사전에 답변을 받는 것을 제안함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질의사항을 사전에 예산평가팀에 연락하여 답변을 받겠음.

3. 폐회선언

- 차기 회의는 2018.1.22.(월)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정하며, 본예산 심사·의결 관련 회의는 2018.1.31.(수)에 갖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8. 1. 15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